

# ISO 18000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김광태 /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소장

**“가칭 ISO 18000은 향후 국제무역에서 기술 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선제 대응한다면 국제무역의 경쟁무기로써 활용되어 질 수 있다.”**

## 1. 출현배경 및 의의

'92년 브라질 리우회담을 전후로 하여,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기업의 환경경영 활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160여개의 각종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 중에서 18개 협약이 강제적인 무역규제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무역규제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국제환경협약을 근거로 하여 협약 미가입국가나 불이행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수입제한 및 금지조치 등이 향후 국제통상문제의 핵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러한 국제적 조류는 최근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UR)이후, 환경관련 통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 즉 그린 라운드(GR)로 발전되어 국제 무역질서의 재편을 요구할 하나의 축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환경관련 규격들에 대한 국제적 조화가 없을 경우 앞으로 다가올 신국제무역질서의 장애요인으로 부각될 것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sup>1)</sup>의 국제환경표준화는 국제적 차원에서 기업의 환경보전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국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규격들을 통일, 향후 상품 및 용역의 거래시 ISO에서 인증하여 주는 제도로써 GR내에서 국제환경규격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즉, 미국, 영국, 독일 등 20여개국에서 환경규격을 정해 놓고 있는데, 여타의 국제환경규제와는 달리 조직 및 제품에 대한 각국의 환경규격들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비록 ISO의 국제환경표준화가 기업의 자율적 환경보전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구환경보전이라는 명분아래 환경기술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선진국의 저의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91년 국제상공회의소(ICC)의 건의와 '92년 리우 회담의 "지구서밋" 개최 당시 주요국 표준화기관의 요청에 따라 ISO내에 환경경영전략자문그룹(SAGE: Strategic Advisory Group on Environment)을 설립, 2년간의 논의 끝에 환경분야에 관한 기술전문위원회(TC 207)<sup>1)</sup>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결과 '93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환경기술전문위원회(TC 207)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 논의되는 환경규격에 관한 국제인증제도를 가칭 ISO 18000시리즈라고 명명하였다.

가칭 ISO 18000은 GATT내 기술장벽협정(TBT)<sup>2)</sup>의 예외조항을 이용, 향후 국제무역에서 기술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TC 207 창립총회 개최 : '93. 6. 2 ~ 6. 3

- 사무국 : 캐나다
- 회의장소 : 토론토
- 회의결과 : 주제별 5~6개 전문분과위원회(SC) 설치
- 향후계획 : '95년까지 주제별 규격(안)이 발표될 계획

TC 207의 참여국가 : '93년 7월 현재

- P-멤버국가 :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한국 등 23개국
- O-멤버국가 : 싱가포르, 말레이지, 태국 등 8개국

## 2. 주요내용 및 파급효과

### 가. 주요내용

ISO/TC 207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환경표준화 작업은 환경경영시스템(EMS), 환경감사(EA), 환경라벨링(EL), 환경성과평가(EPE), 수명주기평가(LCA), 용어 및 정의(T&D), 그리고 제품표준의 환경적측면(EAPS) 등 7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제품 및 용역의 생산과정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표-1) 참고).

### 나. 파급효과

- 1) 국제표준화기구(ISO) : 국가간의 규격적용을 통일시킴으로써 국제간 상품 및 용역의 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46년에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는 63년에 가입하였고 현재 회원국수는 90여개국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 2) TC(Technical Committee)는 국제기준을 심의하고 제·개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전문위원회로 각 TC는 수개의 전문분과위원회(SC: Sub-Committee)를 두고 있으며, SC는 필요시 작업반(WG: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 3) 기술장벽협정(TBT: Technical Barriers on Trade)은 비관세장벽의 일종인 기술장벽의 제거를 목적으로 동경라운드에서 제정된 "상품표준에 관한 협약"에 따른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80년 9월에 가입하였다. 기술장벽이란 수입제한을 초래하는 각종 공산품의 규격이나 안전규격 등을 의미한다.

〈표-1〉 주제별 국제환경표준화 작업

주 제	내 용	소요기간
SC 1 환경경영시스템(EMS: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 환경정책, 목적, 방침의 적합성을 보증하기 위한 환경관리체계에 관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	2년
SC 2 환경감사(EA:Environmental Auditing)	◦ 환경영향을 관리, 통제하는 조직의 능력을 평가하며 감사요소, 절차 및 감사자를 규정	2년
SC 3 환경라벨링(EL:Environmental Labeling)	◦ 소비자의 환경상품선택 용이성 제고와 상품별 환경기준 및 측정방법, 광고기준, 소비자의 불만에 대한 증명방법 등을 규정	2~3년
SC 4 환경성과평가(EPE: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의 환경영향 관련 제요소의 정성적 정량적 평가방법을 규정	3~4년
SC 5 수명주기평가(LCA:Life-Cycle Analysis)	◦ 설계, 생산, 사용, 폐기 등 일련의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제조조건들을 설정할 수 있는 제품 설계 지침을 규정	5년
SC 6 용어 및 정의(T&D:Terms & Definition)	◦ 환경관리내 용어와 정의에 관한 국제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설정	2년
WG 1 제품표준의 환경적측면(EAPS: Environmental Aspects in Product Standards)	◦ 제품 표준제정시 고려해야 할 환경적합성의 개념과 특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	1~2년

환경규격에 관한 국제인증제도인 ISO 18000은 기업경영의 전반을 평가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보다 강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과정을 중심으로 보는 기존의 품질규격에 관한 인증제도인 ISO 9000 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ISO 9000은 TC 176에서 제정된 제도임).

이는 향후 국가간의 통상에 있어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될 것이고, 기업경영에 있어 반드시

시 뛰어넘어야 할 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나 조기에 대응해 나간다면 오히려 경영상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표-2〉 참고).

-국제무역에 있어 위협 및 기회요인으로 작용될 것이고,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변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환경관련 기술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표-2〉 ISO 18000의 파급효과

구 분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환경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의 자율관리 강화에 따라 행정상의 법규확대 감소</li> <li>• 관료적이거나 사무적인 각종 불필요한 요구의 최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법 (KS, 환경처 규제) 개정시 혼란 예상</li> </ul>
국제통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간 규격통일로 인해, 특히 다국적 기업의 경우는 규격을 단일관리할 수 있어 무역장애 최소화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국의 무역장벽화</li> </ul>
기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 미취득시에는 기업의 이미지 실추</li> </ul>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기술 및 산업의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장벽에 의한 국내산업활동 위축</li> </ul>

## II. ISO 18000의 전망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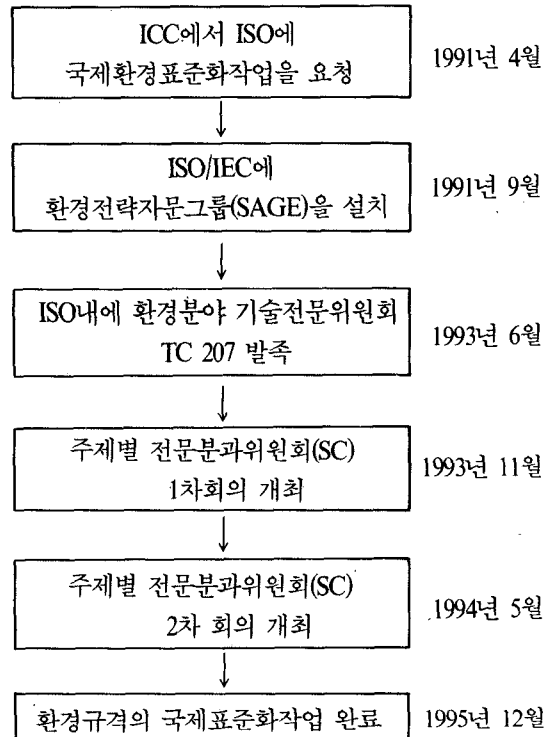
### 1. ISO 18000의 추이

'93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환경분야 기술전문위원회인 TC 207이 발족되면서 ISO 18000이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93년 10월에서 11월사이 5개의 전문분과위원회(SC) 1차회의가 개최되었다(그림-1) 참고).

각국은 저마다 자국에 유리한 환경규격을 채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환경경영시스템(SC 1) 및 환경감사(SC 2) 규격이 주요 관심사로 되어 있다. 각 전문분과위원회(SC)는 세부작업 진행을 위한 작업반(WG)을 두어 국제환경표준화작업을 진행하며, 작업결과는 SC에서 정리, TC에서 채택하는 형태로 회의가 진행되고 94년 5월 호주회의에 상정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입장을 나타내는 Position Paper와 자국의 환경규격관련자료를 작업반에 검토대상 문서로 제출하고 설명하기로 되어 있다.

(그림-1) ISO의 국제환경표준화 작업 진행과정



〈 위원회별 회의 일정계획 〉

위원회	1차회의	2차회의	3차회의	최종결정
TC 207	1993. 6	1994. 5	1995. 6	
SC 1	1993. 10	1994. 5	미정	1995년말
SC 2	1993. 10	1994. 5	미정	1995년말
SC 3	1993. 11	1994. 5	미정	1995년말
SC 4	1993. 11	1994. 5	미정	1997년경
SC 5	1993. 11	1994. 5	미정	1995년말

주로 유럽지역 국가들이 회의를 주도하였으나, 최근 미국과 일본이 가세하여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수동적인 자료수집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93년 10월말 암스텔담에서 열린 SC 1(EMS)과 SC 2(EA)에는 20여개국에서 1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정부인사, 각 협회, 대기업 등 18명의 대표단파견과 동시통역시스템을 자비로 설치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하였다. '93년 11월 초 파리에서 열린 SC 3(EL)와 SC 5(LCA)에도 20여개국에서 1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주로 유럽, 미국 및 일본의 의견탐색장이 되었다.

그리고 '93년 11월중순 뉴욕에서 열린 SC 4(EPE)에는 15개국에서 7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주로 SC 1(EMS) 및 SC 2(EA)와 SC 4(EPE)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인증제도가 확정되는 시기는 분야별로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SC 1(EMS)과 SC 2(EA)의 경우 '95년말까지 작업이 완료될 계획이다(〈표-3〉참고). 한편, 기업측도 경영에 있어서 점차 환경관리를 중요시하고 있고 그것을 점검하기 위

한 내부감사의 실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여겨진다.

## 2. 주제별 유망규격전망

기존의 ISO규격 및 영국의 BS 7750이 환경경영시스템(EMS)과 환경감사(EA)규격의 기본골격을 형성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나머지규격을 만들어 가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은 자국의 환경규격 또는 국제환경규격시안을 마련하여 ISO에 제출하고 있는데, 미국 및 EC가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주요 선진국의 환경규격이 국제환경규격으로 상당부분 채택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각 주제별로 참고자료를 접수하여 작업반에서 검토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로서 환경경영시스템(EMS)은 영국의 BS 7750이, 환경감사(EA)는 EC의 EMAS나 캐나다의 CA가, 수명주기분석(LCA)은 미국의 SETAC가 크게 참고될 것으로 예상된다(〈표-4〉참고).<sup>4)</sup>

현재의 추이로 볼 때 환경경영시스템(EMS)은

4) ① BS : British Standard  
 ② EMAS :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③ CS : Canadian Standard  
 ④ SETAC : Society of Environment Toxicology and Chemistry

〈표-4〉 주제별 유망규격전망

주 제	간 사 국	유망규격	비 고
SC 1	영 국	영국 BS 7750 EC의 EMAS	
SC 2	네델란드	캐나다 CS EC의 EMAS	
SC 3	호 주	불 확 실	
SC 4	미 국	불 확 실	
SC 5	프 랑 스	미국 SET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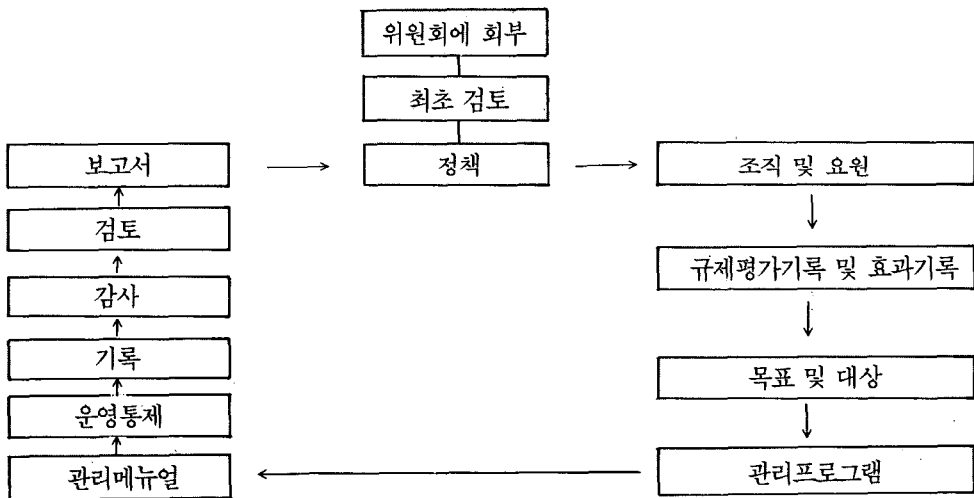
영국의 BS 7750이, 환경감사(EA)는 EC의 EMAS가<sup>9)</sup> 채택될 가능성이 유력시 되고 있다.

환경경영시스템(EMS)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국의 BS 7750을 살펴보면, 기업이 환경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모델을 (그림-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 규격을 이해하기에 앞서 첫째, 규격에 적합하다는 것으로 법적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는 점과 둘째, 규격이 특정 환경기준(예; 배출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2)에서 서술된 일련의 과정은 단지

(그림-2) 환경관리체계의 수행과정 모델



5) EC의 EMAS와 관련 EC는 '93년 6월 29일 Eco-Management and Audit Regulation을 공포하였다. 가입자체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가입한 기업은 기업활동에 따른 모든 환경관련정보를 일정한 형식과 내용지침에 의거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95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표-5〉주요 선진기업들의 환경경영활동

기업	환경경영활동 내용
스웨덴 Volv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9년 새로운 환경방침을 결정, '90년부터 자사 6개 공장을 대상으로 환경감사를 시작.</li> <li>- '94년 그룹 차원의 환경감사를 실시할 예정.</li> <li>- 감사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어 공장책임자에게 보내지며 책임자는 이를 기초로 개선계획을 수립, 이사회에 제출.</li> </ul>
獨逸 Elida Gib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년부터 내부 환경감사를 실시.</li> <li>- 내부감사와는 별도로 매년 외부감사기관에 의뢰, 제품의 성분표시, 제조방법을 검사하고 있으며 규제에 대한 적합여부,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함.</li> </ul>
獨逸 BAS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이 1,129명에 달함.</li> <li>환경부문은 경영회의 직속으로 책임자는 경영방침의 결정에 관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li> <li>- '88년부터 본사공장의 환경활동에 관한 환경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본보고서에는 환경대책, 신기술 등 전년의 환경에 관련된 활동보고와 화학물질의 배출량, 사용에너지 등의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음.</li> </ul>
日本 NE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3년부터 자주환경감사와 종합환경감사로 나누어 실시중</li> <li>- 자주환경감사는 사업장에서 년 1회 자체적으로 실시</li> <li>- 종합환경감사는 본사에서 년 1회 각사업장에 대해 실시</li> </ul>
日本 Hitach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1년에 환경정비센터를 발족시키는 동시에 환경감사에 전념해 왔으며, 현재 환경관리센터에서 자사사업소 및 그룹전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li> </ul>
日本 Toyo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2년 새로운 기업이념을 책정, '도요다 지구헌장' 을 제정</li> <li>-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요다 환경위원회를 설치.</li> <li>- 공장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룹내, 사내, 협력회사에 대해 환경감사를 실시.</li> </ul>

길잡이 역할을 할 뿐이며, 비록 아래 그림이 환경 관리체계를 설립하려는 조직의 활동과정에 대한 이론적 순서를 서술하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거쳐온 어느 단계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라도 되돌아 갈 수 있어야 된다.

### 3. ISO 18000 타결상의 과제

현재 진행중인 국제 환경규격제도가 타결되는 데에는 몇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데, UR이나 ISO 9000의 경우처럼 미국, EC 등 서구 선진국의 이해

관계가 합치되는 점에서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 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해상충 조정

환경기술이나 환경관리체계가 앞서 있는 서구 선진국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환경표준화 작업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해상충에 대한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고려

기업규모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기업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제정비, 비용부담 등을 고려할 때 외부감사

〈표-6〉주요국기들의 대응현황

국 가	대 응 현 황
E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C위원회는 ISO9000에 준거하여 기업내에 품질관리시스템과 유사하고 환경감사를 포함한 환경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기업의 환경대책을 촉진코자 하고 있으며 다음을 골자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고경영층에서 환경대책의 방침이 설정되어 있을 것.</li> <li>-환경보전조직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을 것.</li> <li>-환경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성명으로서 정리할 것.</li> </ul> </li> </ul>
네델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에서 환경감사를 포함한 환경관리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으며, 현재 종업원 200명이상의 기업기준 약 70%정도 보급되어 있음.</li> <li>-'95년까지 중·대형규모의 기업 1만 2천개중 1만개 기업에 대해 완전한 환경관리체계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li> </ul>
英 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규격협회(BSI)는 '92년 4월 환경관리체계의 영국규격(BS7750)을 작성한 바 있으며 정식발효는 '93년 9월 1일까지 전문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li> <li>-현재는 35개 업종의 200개사를 대상으로 시험적용하고 있음.</li> <li>-시범적용을 통해 참여기업내에 BS7750 규격에 준거한 환경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 그 결과를 EC 규격에 반영코자 함.</li> </ul>
日 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 및 제품에 대한 시험방법 규격은 정립되어 있으나, 제조 및 폐기에 대한 규격은 전무한 실정임.</li> <li>-환경관련 ISO/TC207에 최근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을 고려 한 생산, 설계의 규격화 등 JIS 제 7차 장기계획에 환경관련 규격을 포함시키고 있음.</li> </ul>
美 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TM내에 6개 환경전문분과위원회(토양, 수질, 대기, 폐기물, 생화학, 환경평가)를 설치하여 규격개발</li> <li>-환경라벨규격 1종, 환경성과평가규격 36종, 환경감사규격 3종, 환경경영체제규격 37종, 라이프사이클규격 96종(총 173종)</li> <li>-3~5년내 전기업에 외부환경감사규격을 의무적으로 실시될 예정.</li> </ul>

나 감사정보의 공개를 실행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국제환경표준화작업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조치사항을 고려하는 작업반을 구성중에 있다.

③ 업종 및 업태별 적용의 어려움

환경경영 감사는 아직 그 포괄적인 정의가 확실하지 않을뿐더러 다른 회계감사처럼 명확한 체계와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환경경영시스템(EMS) 및 환경감사규격(EA)이 국제규격으로서

골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 업종 및 업태에 적용될 가이드라인을 시행착오적으로 정립되어 나갈 것으로 본다.

④ ISO 9000과의 연계

비록 ISO 18000의 접근방법이 ISO 9000과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상호 상충되지 않도록 접목시키는 것이 또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다.



### Ⅲ. 선진기업 및 국별 대응현황

#### 1. 선진기업들의 대응현황

현재 유럽의 주요기업들은 환경감사(EA)를 중심으로 한 환경경영시스템(EMS)을 도입, 내부 준비 작업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최근 ISO 18000국제회의에 적극 참가하여 정보수집 및 자국의 입장 반영에 주력하고 있다(표-5) 참고.

#### 2. 주요국가들의 대응현황

선진국들은 이미 자국내에 환경경영에 관련된 규격이 제정되어 있으며, 자국의 환경규격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국가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다(표-6) 참고.

#### 3. 우리나라의 대응현황

ISO의 국제환경표준화 작업이 진행되어 온 과거 2년간은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국제추이를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오염물질의 농도에 대한 분석시험 방법위주 규격으로써 화학, 기계 등 각 부문별로

환경규격이 산재되어 있다. 즉 제품규격검토시 환경적 영향이 크게 고려되지 않는등 환경규격제도 자체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환경규격중 환경라벨링(EL)이 일부 환경마크표시제도로 환경보전협회가 중심(환경처 후원)이 되어 실시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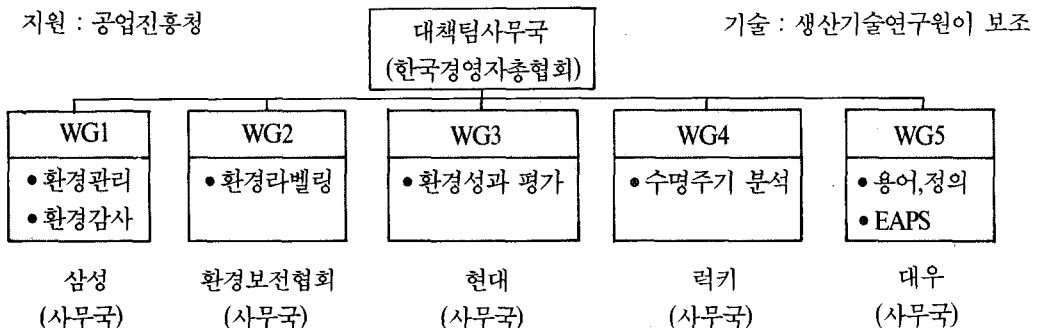
'93년 10월과 11월사이에 개최된 각 전문분과위원회(SC)에 국가대표단이 파견되었는데, 삼성그룹은 모든 전문분과위원회(SC)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오고 있다.

최근 ISO 18000시리즈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대책팀이 구성되었으며 가칭 국제환경경영표준화 대책팀 이라 불리는 조직내에 학계, 대기업, 연구소, NGO 등의 대표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그림-3) 참고.

구체적으로 대책팀의 작업일정을 보면, '93년 11월 27일까지 각 작업반을 구성하여 사무국(공업진흥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올 연말까지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리하여 내년초 ISO/TC 207의 각 작업반(WG)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다.

이와는 별도로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ISO 18000시리즈 인증을 획득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등도 논의되고

(그림-3) 민간대책팀 구성현황



있다.

2. 정부의 대응방안

IV.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 경제주체별 당면과제

앞으로 국제무역질서의 축으로 발전될 ISO 18000에 대응하기 위한 당면과제로는 크게, ① 국제환경규격표준화 작업에의 적극 참여, ② 환경경영시스템(EMS) 및 환경감사(EA) 제도의 도입기반 구축, ③ 국내 환경규격의 체계적 정비 및 국제화추진에 있다고 판단되며 경제주체별로 정리하면 <표-7>과 같다.

첫째, 정부차원에서 국제환경규격표준화에 대비한 국내대응체제 구축이 시급하며, 따라서 정부와 업계 그리고 학계나 소비자단체들이 총망라된 범국가적 대응조직을 주제별로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둘째, 국내환경규격의 국제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국가환경규격의 통일 및 선진환경규격과의 조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국내기업의 국제환경규격표준화에 대비한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인증을 취득한 기업이나

<표-7> 경제주체별 당면과제

과 제	정 부	업 계	국 민
국제환경규격표준화작업 적극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대응체제구축</li> <li>•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 (P멤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너지효과를 위한 공동대응</li> <li>• 업계와 협회간 정보교환체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계 및 전문가 참여</li> </ul>
환경경영시스템 도입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계의 적극도입 장려책 마련</li> <li>• 환경경영시스템 및 환경감사의 인증제도 도입기반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경영전략으로 전환</li> <li>• 국제 유망규격의 도입, 실시</li> <li>• 환경 전문인력 양성</li> <li>• ISO 9000 관리조직과의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우수기업 및 제품에 대한 소비자인식 제고</li> <li>• 언론의 적극참여</li> </ul>
국내환경규격 체계적 정비 및 국제화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내 환경업무 창구 일원화</li> <li>-정보수집력 및 추진력 제고</li> <li>• 국가 환경규격의 통일</li> <li>-KS규격과 연계</li> <li>• 환경산업 분야의 규격 보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별 환경규격 선도적 제시</li> <li>• 해외 환경선진기업과의 정보교환</li> <li>• 업계 전담창구 확보 및 활동강화</li> </ul>	

(그림-4) 환경경영시스템 감사제도 구축단계

1994년	1995년	1996년
<p>환경경영시스템 및 감사제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S7750, EMAS 도입</li> <li>→ 시범사 적용</li> <li>• 사업장정밀진단 실시</li> <li>→ 중장기계획 수립</li> <li>• 환경교육프로그램운영</li> <li>→ 전문인력 양성</li> </ul>	<p>시행결과 수정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결과 Feedback</li> <li>→ 수정 및 보완</li> <li>• 제품수명주기분석</li> <li>→ 환경영향평가 실시</li> <li>• 전담조직 확대개편</li> <li>→ 타부서와 연계강화</li> </ul>	<p>환경경영시스템 및 감사제도 정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경영 감사시스템</li> <li>→ 메뉴얼화</li> <li>• 국가 정보POOL 구축</li> <li>→ 국내전체기업 참여</li> <li>• 국제표준화동향 파악</li> <li>→ 수정, 보완</li> </ul>

제품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서 국내업체의 대응을 조기에 진작시켜야 한다.

네째, 정부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외국의 인증기관과도 유기적인 활동 강화를 통해 상호인증체제를 구축하여 업계를 지원해야 한다.

### 3. 업계의 대응방안

첫째, 환경경영시스템(EMS)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현재 추이로 볼 때 영국의 BS 7750이 환경경영시스템(EMS)의 국제표준규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도입하여 시범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또한, 사업장정밀진단을 실시하여 각사업장의 환경부하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실성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상설적인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둘째, 각사업장의 환경관리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환경감사(EA)를 도입하여 실시해야 하며, 이의 국제환경규격으로 EC의 EMAS를 중심으로 고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시범적용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설계, 생산, 제품, 폐기 등 제품수명주기 각 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원천적인 오염저감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기존의 환경관리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여 연구개발, 기획, 생산 등 타부서와의 연계가 이

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세째로, 환경경영시스템(EMS) 및 환경감사(EA)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든 업무들이 메뉴얼화되어야 하며, 국가차원의 시너지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국내전기업의 정보 POOL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그림-4)참고.

### 4. 국민의 대응방안

첫째, 학계, 연구소 및 NGO 등에서 환경전문가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 이론적 및 실천적인 차원에서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업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일반 국민들이 소비자로서 환경우수기업 및 제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선구매함으로써 기업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그린 마케팅 개념을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여 기업의 환경윤리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기업이 적극 참여하여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환경문제를 국가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써 선제 대응한다면 국제무역의 경쟁무기로써 활용되어 질 수 있다고 본다.